

2026 경기 기후테크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(안)

□ 목적
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후테크 기업의 공공구매 상담을 통해 공공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 지원

□ 행사개요

- (일시/장소) '26.12.8.(화) 13:00~15:50 / 노보텔 수원 2층 아잘레아홀
* 주소 :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
- (참석대상) 경기지역 공공기관 및 기후테크 중소기업
 - 공공기관 : 지역난방공사, 도시공사, 지자체 등의 구매담당자 등
 - 기업 : 경기지역 기후테크, 소셜벤처 분야 창업·벤처·중소기업
- (주요내용) R&D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, 기후테크 기업-공공기관 구매상담, 네트워킹 등

※ **구매상담회** :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1:1 구매상담(기업별 20분 내외)
- (공공기관) 기관 수요품목 제시 및 구매 상담
- (기업) 제품 특성 및 AS 방식 등 설명

□ 세부일정(안)

시간		주요내용	비고
13:00 ~ 13:10	'10	• 참석자 등록 및 개회	
13:10 ~ 13:20	'10	• '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' 설명	
13:20 ~ 13:50	'30	• R&D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설명	기정원
14:00 ~ 15:30	'90	• 기후테크 기업-공공기관 1:1 구매상담	
15:30 ~ 15:50	'20	• 기업별 자유 홍보, 추가상담 및 네트워킹	자율

□ 참여 신청

- 상담회 참여 희망기업은 참여 신청서(붙임) 제출 (~11.20(금))
 - (제출처) 담당자 이메일(jm6676@korea.kr)

「2026 경기 기후테크 공공구매 상담회」 참여신청서

기업 현황					
기업명				설립연월일	
사업자번호				대표자	
주소					
담당자		소속 /직위		연락처	
				e-mail	
기업 및 제품 소개 (3줄 이내)	※ 별도 기업 및 제품 소개자료 첨부 가능				
제품/인증 정보					
공급품목(상답품목)					
홈페이지(또는 스토어 등)					
제품사진(별도 첨부)	(별 도 첨 부)				
보유 인증 (중소, 여성, 장애인, 창업, 기술개발 제품 등)					

위와 같이 「2026 경기 기후테크 공공구매 상담회」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기업명 :

대표자 :

(인)
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귀하

붙임 2

기후테크, 소셜벤처기업 기준

□ **기후테크** : 기후와 테크의 합성어로,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 기술

구분	개념	세부 내용	
클린테크 (Clean Tech)	재생·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	재생에너지	재생에너지 생산, 에너지 저장장치, 건물 전기화
		에너지신산업	가상발전소, 송배전, 분산형 에너지공장, 에너지디지털화
		탈탄소에너지	원전, SMR, 수소,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
		에너지저장	에너지 저장 장치, 차세대 배터리
카본테크 (Carbon Tech)	공기 중 탄소포집·저장 및 탄소 감축	탄소포집	직접포집(DAC), CCUS, 생물학적 탄소제거
		공정혁신	제조업 공정 개선, 탄소저감 연·원료 대체
		모빌리티	전기차, 차량용 배터리, 물류, 퍼스널 모빌리티
에코테크 (Eco Tech)	자원순환,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	자원순환	자원 재활용, 업사이클링, 폐자원 원료화, 에너지 회수
		폐기물절감	폐기물 배출량 감축, 폐기물 관리시스템
		업사이클링	친환경 생활소비제품
푸드테크 (Food Tech)	식품 생산·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감축	대체식품	대체육, 세포배양육, 대체유, 대체아이스크림
		스마트식품	음식물쓰레기 저감, 친환경 포장, 식품 부산물 활용
		애그테크	친환경농업, 대체비료, 스마트팜, 기후적응 품종개량
지오테크 (Geo Tech)	탄소관측·모니터링 및 기상정보	탄소데이터	탄소관측, 측정, 회계, 컨설팅 및 배출권거래
		기후데이터	기후감시·예측 및 컨설팅, 기상재난 정보, 디지털 트윈
		기후적응	물산업, 재난방지, 기후위기 적응 시설·시스템

□ **소셜벤처기업** :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
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, 동법 제16조의10제1항 및 「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」 참조

* 소셜벤처기업 인증서 필수아님